한 스페인 사회보장 협정 및 피부양자 제도

1.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2011 년 7 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 년 4 월 1 일부터 발효되었다.

2.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 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 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 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7 년, 스페인에 9 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 년)되어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스페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7 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직전 15 년 이내에 2 년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5 년의 납부기간이 필요하다.

한국과 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 개국으로 늘어났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과 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 협력 센터 (02-2176-87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 피부양인 보호법>

2006 년 12 월 14 일 39/2006 "피부양인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스페인의 피부양인들을 위한 스페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Care for Dependency 라고 불리는 국립 및 사립서비스를 통한 피부양인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부양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서비스 패키지 보호법이다.

이 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일상 생활의 기본 활동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부여, 통제, 선택 및 개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의존이란 "질병이나 장애의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자율성의 결여 또는 손실 등 일상 삶의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면 다른 사람 또는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나 질병이나 사고을 겪거나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동 피부양인 복지서비스로 일상 생활의 발전과 자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8 년 스페인은 4,600 만 명에 이르는 인구 중에서 피부양인 보호법 수혜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2 백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CSIC(고등과학연구소) 연구자 Abellán, Esparza 와 Pérez Díaz 선임 연구원은 인구 노령화에 따라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 및 낮은 교육수준의 사람들의 의존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는 장애와 질병과 관계가 있으며, 초기증상시, 실외 이동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가정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서부터 개인 위생의 문제까지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가족의 지원이 일반적이며 그 중에서도 보통은 여성이 피부양인의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된다.

부양 자녀 또는 청소년을 둔 어머니로서,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의 아내로서 또는 딸로서, 기능 장애가 있는 노부모의 딸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은 피부양인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 법의 구조는 3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의존성 정도 등급>

다음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1 등급 보통 의존: 일상 생활에서 몇 가지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또는 개인적인 자율성에 대한 간헐적이거나 제한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2 등급 심각한 의존: 하루에 2-3 번 일상 생활의 몇 가지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피부양인. 그러나 간병인의 영구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자율성확보를 위해 폭 넓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3 등급 완전 의존성: 하루에 여러 번 일상 생활의 여러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피부양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는 안되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 나머지 등급보다 우선시 된다.

자금 조달 및 예산

스페인은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 6 억 3 천 8 백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였다. 첫 해 2007 년에는 4 억 유로로 시작하여 2015 년에는 22 억 천 2 백만 유로로 증가했다.

2012 년 7 월 13 일 법령 20/2012 시행 이전에 사회보장연금공단에 서명한 간병인 계약은 2012 년 8 월 31 일에 소멸되었다. 이 경우, 2012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수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수혜자는 본인 자체 부담금으로 간병인비용의 85%를 지불하여야 한다.

피부양인 복지 서비스 혜택 수혜자는 소득 비율에 따라 최대 35%까지 피부양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가족 중 한 명이 양로원 비용의 90 %를 지불 할 수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가능할 때까지 지불해야 한다.

피부양인 복지 혜택제도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시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피부양인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Centro de Servicios Sociales Fuerte de Navidad

주소: Calle Fuerte de Navidad, 15, 28044 Madrid
전화번호: 914 80 03 67/ 91 480 0513
이메일주소: cssfuertedenavidad@madrid.es

이 복지시설은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이 사고 후 간병을 해 줄 수 있는 피부양인이 없고 본인 자비로 피부양인을 고용하지 못하나 장기간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활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간병 및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동 기관에는 연금수혜자들의 양로원으로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지자체 사회서비스 처리 및 관리 (자택방문상담, 전화상담, 시립 센터, 보호아파트운영) 및 사회 재활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 마드리드 자치주 피부양인서비스, 양로원, 장애인복지, 여성, 미성년자 등의 복지 서비스 및 저소득층 (RMI)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